

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년 월 일	2006년 7월 10일 (제170회)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2006. 7. 7
발 의 자	반광홍의원 외2인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06. 7. 7

의안 번호	1
----------	---

발 의 자 : 반광홍의원 외2인

1.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동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는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음성군의회는 연간 회의총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제3조)

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0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4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제4조)

다.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1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8일로 함 (안제4조)

라.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기본일정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제5조)

마.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불 입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불입 참조)

5. 제안자 의견

현행 지방자치법상 연간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전면개정을 통하여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유급제 도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탄력적 의회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 바임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4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참 고 사 항】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39조 (임시회)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2006.4.28>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③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 <2005.1.27>

③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4.28> [시행일:2006.7.1]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7.1>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부의안건

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